의안번호	제98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1999. 8.

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 99 호

제출년월일 1999. 8. 4
제 출 자 서 산 시 장

1. 폐지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자인서징구 조례를 폐지하고 나아가 법령에서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권한을 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기 현행조례를 폐지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·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

○행정규제기본법 제5조

나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다. 서산시규제개혁심의회 심의(99. 6. 23) 결과 완화

라. 기타

-동조례 검토의견 (법무11250-462(99. 7. 5)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서산시국민건강증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위원회운영)①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간사와 서기는 시·읍·면소속 관계공무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(신설)	제6조(위원회운영)①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②간사와 서기는 시·읍·면소속 관계공무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.